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45조의3제1항 관련)

I. 일반사항

1.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2. "어법"(漁法)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며, 탐어(探魚)와 집어(集魚) 및 어획의 과정을 포함한다.
3. "어구 겨냥도"란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을 말한다.
4. "표준어구 구성도"란 어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린 기본적인 도면을 말한다.
5. "조업모식도"란 조업하는 방법을 정리·배열한 그림을 말한다.
6. "뜸" 또는 "부자"(浮子)란 물속에서 어구를 뜨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을 말한다.
7. "발돌" 또는 "침자"(沈子)란 물속에서 어구를 가라앉게 하거나 그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구에 부착하는 물건을 말한다.
8. "투망"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서 주로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서 물속에 투하하는 것을 말하고, "투승"이란 낚시나 줄을 투망하는 것을 말한다.
9. "예망"(曳網)이란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을 말한다.
10. "양망"(揚網)이란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하고, "양승"이란 낚시나 줄을 양망하는 것을 말한다.
11.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로보조선을 말한다.
12. "경사로"란 저인망 조업에서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미(船尾) 측을 경사지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II.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1-1 및 부도 1-2와 같다.

- 1)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2)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